

2018년 03월

농식품 통관거부 및 식품안전사례 동향분석

- I.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
 -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 III.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1.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1. (한국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통관거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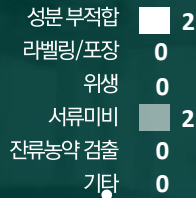
미국

한국산 20건 (17년도 211건)



중국

한국산 4건 (17년도 399건)



일본

한국산 1건 (17년도 19건)



EU

한국산 0건 (17년도 10건)

러시아

한국산 0건 (17년도 1건)

호주

한국산 0건 (17년도 6건)

대만

한국산 0건 (17년도 37건)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제품별 현황

과실견과류 / 총 5건



미국 5건

채소류 / 총 4건



미국 4건

과자류 / 총 4건



미국 2건
중국 2건

음료류 / 총 3건



미국 3건

기타조제 농산품 / 총 2건



미국 2건

캐나다의 경우, 2018년 3월 통관거부 사례가 홈페이지에 미게재되어 확인이 불가능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미국 3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20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미국	3월	어란	수산물	수산부산물	서류	인증서류 미비	-
미국	3월	말린 감	임산물	과실·견과류	성분	잔류농약 검출	-
미국	3월	말린 감	임산물	과실·견과류	성분	잔류농약 검출	-
미국	3월	말린 감	임산물	과실·견과류	성분	잔류농약 검출	-
미국	3월	감	임산물	과실·견과류	성분	잔류농약 검출	-
미국	3월	오징어	수산물	연체동물	성분	리스테리아균 검출	-
미국	3월	버섯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성분	리스테리아균 검출	-
미국	3월	견과식품	임산물	과실·견과류	라벨링	영어로 미표기	-
미국	3월	과실주스	농산물	과실류	라벨링	인공색소 성분 미표기	-
미국	3월	채소	농산물	채소류	라벨링	업체 정보 미표기	-
미국	3월	차	농산물	기타농산 부산물	라벨링	업체 정보 미표기	-
미국	3월	검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수량 정보 미표기	-
미국	3월	사탕	농산물	과자류	라벨링	수량 정보 미표기	-
미국	3월	채소	농산물	채소류	라벨링	수량 정보 미표기	-
미국	3월	탄산수	농산물	음료	라벨링	수량 정보 미표기	-
미국	3월	소프트음료	농산물	음료	라벨링	영어로 미표기	-
미국	3월	채소	농산물	채소류	라벨링	식품 관용명 미표기	-
미국	3월	후추	농산물	채소류	라벨링	식품 관용명 미표기	-
미국	3월	인삼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라벨링	영양소 정보 미표기	-
미국	3월	소프트 음료	농산물	음료	라벨링	영양소 정보 미표기	-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목록

중국 3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4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중국	3월	캔디	농산물	과자류	성분	비타민 E 사용량 초과	폐기 또는 반송
중국	3월	젤리	농산물	과자류	성분	비타민 E 사용량 초과	폐기 또는 반송
중국	3월	조미유	농산물	소오스류	서류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중국	3월	조미유	농산물	소오스류	서류	인증서류 미비	폐기 또는 반송

일본 3월 한국산 통관 거부 발생 사례(1건)

국가	발생일자	상품명	품목	세부품목	문제 사유구분	문제 사유	조치사항
일본	3월	인삼차	농산물	인삼류	위생	세균수 기준치 초과	폐기 또는 반송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미국 Case. 한국 농산물 수출업체, 필수영양소 라벨 미표기로 통관 거부

2018년 3월, 한국의 한 농산물 수출업체는 미국으로 조제 농산품을 수출하였으나,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 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통관이 거부됨.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343(q)는 라벨링에 의무적으로 표기되어야 할 사항인 필수 영양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음

FD&C Act Section 343(q)에 따르면, 통상 소비량, 용기 당 분량 수, 총 열량,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총 단백질, 라벨 혹은 라벨링에 표시하도록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혹은 기타 다른 영양소 등을 필수 기재해야 함

Nutrition Facts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2/3 cup (55g)	
Amount per serving	230
Calories	
% Daily Value*	
Total Fat 8g	10%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3%
Dietary Fiber 4g	14%
Total Sugars 12g	
Includes 10g Added Sugars	20%
Protein 3g	
Vitamin D 2mcg	10%
Calcium 260mg	20%
Iron 8mg	45%
Potassium 235mg	6%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343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Case. 한국 임산물 수출업체, 필수정보 라벨 미표기로 통관 거부



2018년 3월, 한국의 한 임산물 업체는 미국으로 과실견과류를 수출하였으나, 라벨링에 필수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통관이 거부됨.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343(f)에 따르면, 라벨링 표기가 명료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경우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로 간주되어 수입이 거부될 수 있음

또한,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Section 101.15(3)(C)에 따르면, 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단어와 기재진술 그리고 정보들이 영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재 요건사항이 불명확하여 수입이 거부될 수 있음(해당 규정에 따른 예외사항 제외)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Section. 343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 미국, 연장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Section 101.15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dohs/cfdfr/cfrSearch.cfm?f1=101.15>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미국 Case.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 식품 내 독성물질 검출로 통관 거부

2018년 3월, 한국의 한 수산물 업체는 미국으로 자사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독성물질인 리스테리아균(Listeria)이 검출되어 통관이 거부됨. 리스테리아균은 식품을 오염시키고 위장염(Listerial Gastroenteritis) 혹은 심각한 리스테리아병(Listeriosis)을 유발하는 유해균임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USC § 342(a)(1)에 따르면, 독성물질 혹은 유해물질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정·불량식품 (Adulterated Food)으로 간주되어 수입이 거부될 수 있음

▷ 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USC § 342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중국 Case. 조미유 제조업체, 인증서류 미비로 통관거부



2018년 3월, 한국 조미유 제조업체는 중국에 조미유를 수출하였으나, 제출 서류 미비로 상해 지역에서 총 2건이 통관거부 처리되었음.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 발표한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에 따르면, 제품 수입 신고 및 검역 검증 시에는 품질 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농약 및 첨가제 사용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l/2012/201210/t20121015_235105.htm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Case Study

중국 Case. 한국 과자 제조업체, 비타민 E 사용량 초과로 통관거부

2018년 3월, 한국 과자 제조업체 2곳은 중국에 각각 캔디와 젤리를 수출하였으나, 식품 내 비타민 E의 사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상해 지역에서 총 2건이 통관거부 처리되었음.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GB 2760-2014(식품 첨가물 사용 표준)에 따르면, 식품 종류에 따라 비타민 E의 사용 기준치를 설정하였음. 캔디와 젤리는 각각 땅콩과 우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에 해당하는 비타민 E의 사용 기준치는 0.2g/kg으로 규정되어 있음



▷ 중국 위생부, 「GB 2760-2014(식품 첨가물 사용 표준)」,
<http://gb2760.cfsa.net.cn/index.php?m=additives&a=show&faid=30>

일본 Case. 한국산 인삼차, 세균 수 기준치 초과로 통관거부



2018년 3월 한국의 한 식품업체는 인삼차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나, 세균 수 기준치를 초과하여 통관이 거부됨. 일본 후생노동부가 발표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은 식품의 미생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음료, 수산물, 냉동 식품 등에 대한 세균 허용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삼차에 해당하는 분말 청량 음료의 세균 최대 기준치는 1g 당 세균수 3,000임. 그러나 인삼차에서는 1g당 세균수 1.1×10^4 이 검출되었음

▷ 일본 후생노동부,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http://www.shokukanken.com/item/23>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du/0000069965.pdf>

Food Import Refusal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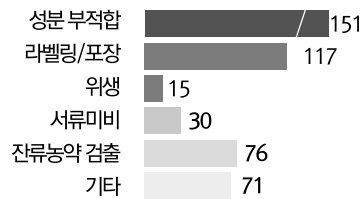
4.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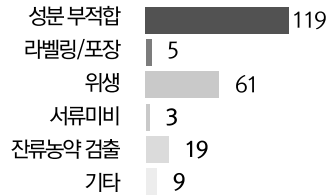
미국

총 46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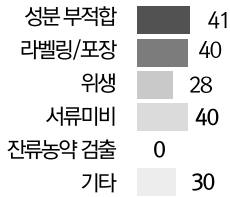
EU

총 21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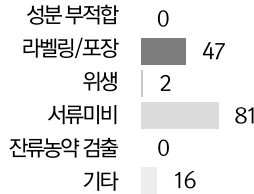
중국

총 179건



러시아

총 146건



일본

총 60건



호주

총 38건



대만

총 32건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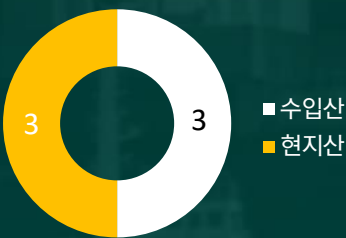


호주

한국산 0건 / 총 6건

2018년 3월 동안 호주에서 발생한 리콜¹⁾ 건수는 총 6건으로 현지산 3건, 수입산 3건인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중국, 미국, 프랑스에서 발생한 것임.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으로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미표기하였고, 2위는 성분으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균이 검출되거나 비소의 최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음. 제품으로는 두부, 단백질 보충제, 아이스크림 등 기타 조제 농산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조류, 채유종실, 낙농품이 각각 1건씩 집계되었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제품별 현황 >

- 기타 조제 농산품 / 총 3건
- 해조류 / 총 1건
- 채유종실 / 총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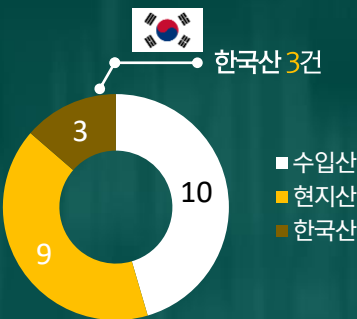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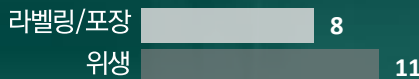
한국산 3건 / 총 22건

2018년 3월 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2건으로 수입산 10건, 현지산 9건, 한국산 3건인 것으로 조사됨. 한국산 제품 모두 라벨링에 견과류 및 달걀에 대하여 식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미표기한 사유로 리콜되었음. 그 중 2건은 코코아가 함유된 스낵이고, 나머지 1건은 비스킷이었음. 한국산 제외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으로 박테리아, 살모넬라균 등이 검출되거나 제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음. 수입국가 중 미국이 총 6건으로 가장 많이 리콜되었으며, 제품별로는 기금육류와 포유 가축 육류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제품별 현황 >

- 기금육류 / 총 3건
- 포유 가축 육류 / 총 3건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 한국산 리콜 제품별 현황 >

- 코코아류 / 총 2건
- 과자류 / 총 1건

1) 리콜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리콜 사례를 의미함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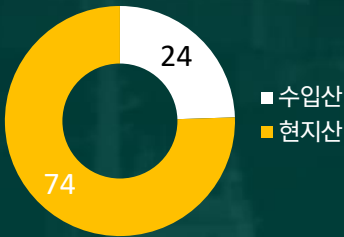


EU

한국산 0건 / 총 98건

2018년 3월 동안 EU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98건으로 수입산 24건, 현지산 74건인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발생하였고,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제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금속, 유리 조각 등이 발견됨. 2위는 성분 부적합으로 유해물질이 발견되거나 기준치 이상의 첨가물이 검출됨. 리콜 제품은 기타 조제 농산품과 채소류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자류, 낙농품, 가공육류 등이 그 뒤를 이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제품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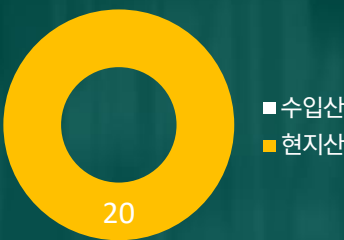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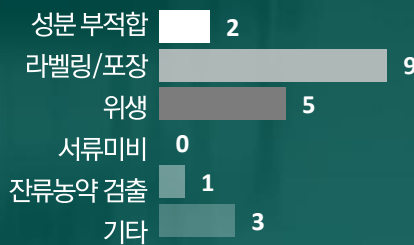
한국산 0건 / 총 20건

2018년 3월 동안 일본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0건으로 20건 모두 현지산인 것으로 조사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 / 포장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미표기하거나 유통 기한을 잘못 기재한 사례가 많았음. 2위는 위생으로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미생물이 발생하였음. 제품별로는 과자, 케이크, 사탕 등 과자류에서 가장 많은 리콜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낙농품, 면류가 각각 3건씩 집계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 리콜 제품별 현황 >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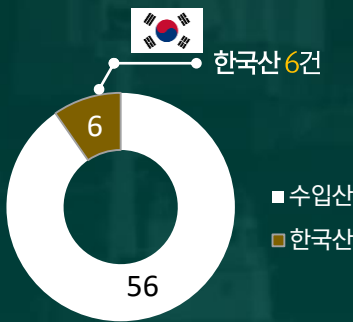


필리핀

한국산 6건 / 총 62건

2018년 3월 동안 필리핀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62건으로 모두 수입산이며 이중 한국산은 6건인 것으로 조사됨. 수입산 리콜은 미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으로 총 14건의 리콜이 발생함. **한국산 제품 모두 제품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여 리콜되었음. 리콜된 제품은 육포, 과자, 김, 인스턴트 식품 등 다양함.** 한국산 제외 리콜 사유 역시 모두 기타로 제품 등록 절차를 불이행한 것임. 제품별로는 기타 조제 농산품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음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기타 56

< 리콜 제품별 현황 >

기타 조제 농산품 / 총 27건

과자류 / 총 8건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기타 6

< 한국산 리콜 제품별 현황 >

과자류 / 총 1건

해조류 / 총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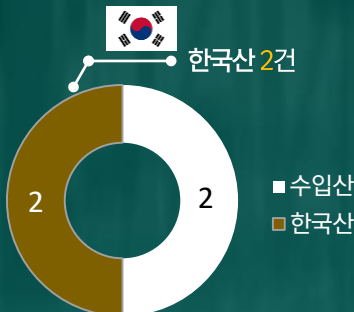


홍콩

한국산 2건 / 총 4건

2018년 3월 동안 홍콩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4건으로 모두 수입산이며, 이중 한국산은 2건으로 집계되었음. **한국산 리콜 제품 모두 쿠키에 해당하는 과자류로 아몬드와 견과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라벨링에 미표기하여 리콜된 것임.** 한국산 제외 리콜 발생 사유는 위생 문제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와 이물질이 검출되었음. 제품은 소시지와 멜론에 해당하는 기타 육류와 채소류임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리콜 유형별 현황 >

위생 2

< 리콜 제품별 현황 >

기타 육류 / 총 1건

채소류 / 총 1건

< 한국산 리콜 유형별 현황 >

라벨링/포장 2

< 한국산 리콜 제품별 현황 >

과자류 / 총 2건

II. 국가별 식품안전사례 동향



싱가포르

한국산 0건 / 총 2건

2018년 3월 동안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건으로 호주산 멜론인 것으로 조사됨. 해당 제품이 리콜된 사유는 모두 위생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인간 리스테리아증(human listeriosis)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인간 리스테리아증은 박테리아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고열, 근육통, 설사 등을 유발함

< 리콜 원산지별 현황 >



■ 수입산

< 리콜 유형별 현황 >

위생 2

< 리콜 제품별 현황 >



채소류 / 총 2건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미국 : 미국 동식물검역소, 한국산 후추를 수입하기 위해 수입 규정 개정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는 한국산 후추에 대한 수입 규정을 개정안을 제출함. 현재 미국에서 허용된 규정은 이중 자동 폐쇄문과 0.6mm 스크리닝이 설치되어 있는 방충용 온실에서 재배된 후추만을 수입하였음. 한국 식물보호단체는 문이 작을수록 공기 유입이 적고 습도가 높아져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입 규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는 스크리닝의 두께를 0.6mm에서 1.6mm로 늘리고 해충방제를 위해 끈적이를 사용하도록 수정함

▷ 관련 링크

https://www.aphis.usda.gov/aphis/newsroom/stakeholder-info/sa_by_date/sa-2018/sa-04/korea-pepper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4/20/2018-08250/imports-peppers-from-the-republic-of-korea-mesh-screening-size>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8-08250.pdf>

미국 :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중국 돼지고기 수입 시 사용한 전자무역문서 교환 시스템 (eTDE) 사용 중단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는 중국 수입산 돼지고기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던 USDA의 전자무역문서시스템(eTDE)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표함. FSIS는 중국에서 수출되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모든 육류에 대해 사전 신고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함

▷ 관련 링크

https://www.fsis.usda.gov/wps/wcm/connect/6142607a-c195-4a26-acb3-8b256fcc4a66/23-18.pdf?MOD=AJPERES&CONVERT_TO=url&CACHEID=6142607a-c195-4a26-acb3-8b256fcc4a66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캐나다 : 캐나다 식품검사청, 미국 로메인 상추 대장균 감염 관련 모니터링 실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는 미국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로메인 상추 대장균 감염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을 회수하여 캐나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25개 주에서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로메인 상추를 섭취하고 대장균에 감염되었음. 캐나다 보건국은 로메인 상추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

▷ 관련 링크

https://foodsafety.einnews.com/pr_news/445814096/tyson-foods-delivers-earnings-growth-in-first-six-months-reaffirms-guidance-for-another-record-year

캐나다 : 해충관리규제국, 농약별 잔류 허용 기준 수정 제안

캐나다 해충관리규제국(PMRA)은 아바멕틴(Abamectin), 피리메탄일(Pyrimethanil)의 잔류 허용 기준의 수정안을 제안하였음. 기존 과일채소류(Crop Group 8)의 아바멕틴 MRLs은 0.02ppm이었고, 해당 기준을 과일채소류의 하위 그룹인 Crop Group 8-09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한편, 배, 사과 등 이과류의 피리메탄일 MRLs은 14ppm이었으나, 15ppm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해당 제안은 오는 8월에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됨

▷ 관련 링크

<https://www.canada.ca/content/dam/hc-sc/documents/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proposed-maximum-residue-limit/2018/abamectin/abamectin-eng.pdf>

<https://www.canada.ca/content/dam/hc-sc/documents/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proposed-maximum-residue-limit/2018/pyrimethanil/pmrl2018-10-eng.pdf>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호주 :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 특수 의료 목적 제품에 L-아미노산 아세테이트 허용 검토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은 식품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특수 의료 목적 제품(FSMP,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에 L-아르지닌 아세테이트(L-arginine acetate)를 포함한 L-아미노산 아세테이트(L-amino acid acetate)를 사용 허가하는 것을 검토중임. 또한, 국수, 유제품, 고기, 생선 등에 단백질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보조제로서 단백질 글루타미나아제(Glutaminase)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음

▷ 관련 링크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proposals/Pages/P1046.aspx>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applications/Pages/A1136.aspx>

EU : 유럽연합, 유기농 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승인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기농 식품 생산 및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법을 채택함으로써 유기농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농 제품 품질 보증(엄격한 위험 기반 검사, 수입의 EU규준 준수성), EU 유기농 제품 생산 증대(유기농 농부의 필요 충족 동물 및 유기농 제품종자 공급 증대, 전환 권장을 위한 혼합농업, 소작농에 대한 증명서 교부 용이성), 및 화학 살충제 혹은 합성비료 기인 오염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음.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본 규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관련 링크

<https://www.eubusiness.com/news-eu/organic-food.19da/>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TA+P8-TA-2018-0180+0+DOC+XML+V0//EN&language=EN>

EU : 아일랜드, 설탕세 (Sugar Tax) 도입

아일랜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 첨가 음료수에 대한 과세를 결정함. 100ml 당 5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적용될 예정임. 하지만, 순수 과일주스와 유제품은 면제 대상임. 100ml 당 5-8g의 설탕 함유 음료의 경우 리터 당 20유로센트(USD 24센트), 100ml 당 8g 이상의 함유 음료의 경우 30유로센트(USD 36센트)가 부과될 예정임

▷ 관련 링크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18/05/02/Ireland-sugar-tax-comes-into-effect>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excise/sugar-sweetened-drinks-tax/index.aspx>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중국 : 농업농촌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 개혁 기간 동안의 업무 변경 사항 공고

중국 농업농촌부는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체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를 개혁하고자 함. 중국 농업농촌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업무에 차질없이 제도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제도 개혁 기간 동안의 업무 변경 사항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였음

- 제도 개혁 기간 동안 친환경 농산물의 원산지 인증과 제품 인증을 통합함
- 성(省)급 농업농촌부의 행정 부서와 그 산하 기구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심사, 전문가 평가, 인증서 수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함
- 농업농촌부는 표준 규범, 검역 목록 등을 작성하고,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라벨 양식, 인증 양식, 검증 규범 등을 관리함

▷ 관련 링크

<http://www.foodmate.net/law/shipin/193532.html>

중국 :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 서비스 제공업체의 조리 과정 공개화 발표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준법 경영을 규범화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식당, 호텔을 비롯한 음식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모든 조리 과정을 투명화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할 것을 발표하였음. 음식 서비스 제공업체는 청결한 의복 및 모자를 착용한 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조리하여 주방의 위생을 유지해야 함. 한편, 레스토랑은 투명한 유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대중들에게 조리 과정을 공개할 수 있음.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음식 서비스 제공업체의 투명화 총괄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省)급의 식품안전 관리부서는 관할 지역의 음식 서비스 제공업체를 관리함

▷ 관련 링크

<http://www.foodmate.net/law/shipin/193537.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대만 : 대만 위생복지부, 일반식품 포함 7개의 식품위생표준 변경 초안 발표

대만 위생복지부는 7개의 일반식품 위생표준 변경 초안을 발표하였음. 7개의 위생표준은 ‘통조림식품위생표준(罐頭食品類衛生標準)’, ‘얼음식품위생표준(冰類衛生標準)’, ‘영유아식품위생표준및잔류농약허용범위(嬰兒食品類衛生及殘留農藥安全容許量標準)’, ‘냉동식품위생표준(冷凍食品類衛生標準)’, ‘일반식품위생표준(一般食品衛生標準)’, ‘포장음용수위생표준(包裝飲用水及盛裝飲用水衛生標準)’, 음료위생표준(飲料類衛生標準)임. 공통적으로 위생표준을 미생물위생표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표준별 자세한 개정사항은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링크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402>

대만 :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에 불완전 경화유 사용 제한 발표

대만 위생복지부는 트랜스 지방이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에 불완전 경화유(不完全氫化油)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음. 오는 7월 1일(식품 제조 일자 기준)부로 적용될 예정임. 이를 위반한 자는 식품안전관리법 제 48조에 의거, 3만~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것임. 한편, 지난 2016년 ‘식용경화유사용제한(食用氫化油之使用限制)’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관련 링크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9817&chk=1f69c105-d75f-4ab4-a604-89f932748359>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ckspaq/fxyj/1849977/index.html>

Monitoring on Global Customs Clearance and Regulation

Ⅲ. 국가별 통관검역제도 모니터링

일본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일부 개정

후생노동성은 식품, 첨가물 규격 기준 일부 개정사항을 공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 233호)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 첨가물의 규격 기준(1959년 후생성 고시 370호)에서 규정하는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잔류 기준치를 삭제함 (자세한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종류 및 잔류 기준치는 개정된 기준 별지 참조)
- 이번 잔류 기준은 삭제된 물질의 경우 일률 기준(0.01ppm)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개정 기준에 기재된 성분들은 규격 규제 제 1식품 부 A 식품 일반 성분 규격 1에서 규정하는 항생제 또는 화학 합성제품인 항균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으면 안됨

▷ 관련 링크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zenbu/180209.pdf>

일본 : 식품 표시 기준 개정(기존 첨가물 등재 품목 목록 개정)

후생노동성은 식품 표시 기준의 기존 첨가물 목록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2018년 2월 1일 “제9판 식품 첨가물 공정서”가 발표됨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별첨의 “기존 첨가물 품목 리스트”의 일부가 개정됨
- 일부 기존 첨가물 공정 및 본질과 관련하여, 식품 및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1959년 후생성 고시 제 370호)의 “제2 첨가물의부 D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 조항”의 규정을 따르게 됨.
- 일부 기존 첨가물에 대한 등 고시 “제 2 첨가물의부 D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 조항”에 따라 별칭 및 단순 이름 등이 정리됨

▷ 관련 링크

https://www.foods-ch.com/anzen/news_00243/